

2024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제출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득공제신고 누락으로 세금을 적게 돌려받거나 부당공제로 인해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본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출기한 : 2025년 1월 31일까지

2. 제출서류 :

(1) 근로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 관련 증빙서류(반드시 원본제출)

(2) 전근무지가 있는 2024년도 입사자 :

- 전직장 2024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가능) ,
- 원천징수영수증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금액이 표기되지 않았을 경우는 반드시 원천징수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공제항목

-부녀자공제(배우자확인가능한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주택자금공제 등본 필히 제출바랍니다.

3. 제출처 : (0617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86길 12, 동남유화빌딩 6층 급여담당자 앞

문의사항 : 02)569-5437~9 급여담당자

보통우편 발송시 분실될 경우 책임지지 않으며 수령여부도 확인해드릴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급여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사항

○ 인적공제항목 작성시 반드시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 받을 부양가족만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소득공제신고서 기본공제란에 동그라미 표시!

인적공제 내용이 전년과동일해도 공제받으실 부양가족분들은 모두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인적사항 기재시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로 작성)

○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상의 저축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저축 소득공제 증명자료상에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를 명확히 기재바랍니다.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바랍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소득공제항목은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기재 안해도 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는 2024년도에 근무하셨던 회사에 신청 또는 2025년 5월 세무서에 개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기간만 해당되며 월별금액을 확인할수 있어야 처리가능합니다.

2024년 중도입사자분은 모든서류가 월별금액(단,의료비는 일별금액)이 확인가능한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서류작성시 근로소득기간만큼 계산해서 금액을 적어주셔야합니다.

단, 기부금 연금저축은 근로기간 상관없이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제공)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2025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

1.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

가. 홈택스 주소 : <http://www.hometax.go.kr>

나. 인증서로 로그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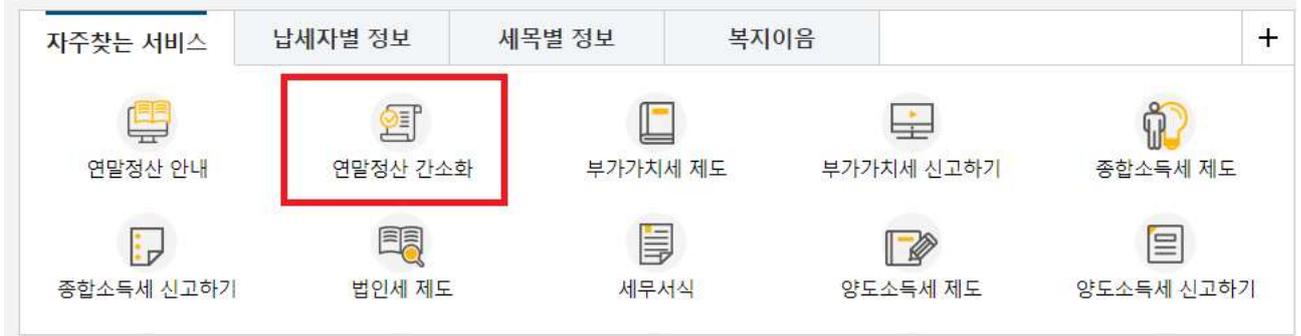
○ 홈택스 첫 화면 상단의 [로그인] 클릭 ⇨ [인증서 로그인] 클릭

○ 인증서 선택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확인] 클릭

※ 이동전화(휴대폰)에 저장된 인증서로도 로그인 가능, 비회원로그인(인증서)도 가능

다.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 출력하기

○ 홈택스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입사자(퇴사자)등 월별지출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월을 체크하고 조회한다.

연말정산 자료 조회시 전체선택이 아닌 입사월~12월을 선택 후 각 항목 조회.(의료비는 일별조회)

○ 중도입사자 : 현회사 근무월만 체크 출력한 자료 제출

(예시) 4월 입사자 4,5,6,7,8,9,10,11,12월만 체크. 4월 의료비는 일별조회자료

중도입사자(타회사근무자) : 전현회사 근무월만 체크 출력한 자료 제출

(예시) 전회사 3월까지 근무후 9월 입사 : 1,2,3,9,10,11,12월만 체크, 3,9월 의료비는 일별조회자료

○ 우측상단의 '공제신고서작성'을 선택



○ 근무처 해당없음, 총급여 0으로 진행



○ 부양가족은 대상인원만 추가(비대상인원 제외)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Step.01 부양가족 입력 Step.02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현재 조회되고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대상자리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입니다.
- 명단에 있는 부양가족 외에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또는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눌러 개별적으로 추가하고,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남 | --

▶ 부양가족 입력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부양가족(인적)공제 명세
부양가족 추가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선택삭제

☐	관계	내외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	기본 공제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기본)	출산입양
<input type="checkbox"/>	소속자 본인	내국인	이	7 -----	N	Y	N	N	N	N	N	N
<input type="checkbox"/>	소속자의 직계존속	내국인	김	4 -----	N	Y	N	N	Y	N	N	N
<input type="checkbox"/>	소속자의 직계존속	내국인	이	4 -----	N	Y	N	N	Y	N	N	N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Y'로 선택하시고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 부양가족까지 입력하였으면 공제신고서 출력

이 남 | -- 새로 작성하기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간편제출하기

기타서류 첨부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공제신고서 출력** 예상세액 결과보기 설문조사 가기

▶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공제 신고서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의료비 지급명세	기부금 명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	----------------------	----------	--------	-----------------

▶ 기본사항

소득자 성명	이	주민등록번호	7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적	대한민국(국적코드 : KR)
근무기간	2022.01.01 ~ 2022.12.31	감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대한민국(거주지코드 : KR)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소득·세액공제 한도 보기

▶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관계 코드	내·외국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	기본 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	출산입양	자료구분	건강보험료	고령보험
-------	----------	----	--------	--------------	-------	-----	-----	------	-----	----	------	------	-------	------

○ 출력시 팝업창은 '취소'를 선택하여 주민번호등을 표시하고, 작성방법은 '제외' 선택

The screenshot shows a web application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confirmation dialog box with the following text:

hometax.go.kr 내용:
정보보호를 위하여 공제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증권번호) 일부에 *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성명,계좌번호(증권번호)의 일부를 *표시 하시겠습니까?
ex) 확인버튼 클릭시 : 820224-***** , 김*** , 087002*****
취소버튼 클릭시 : 820224-1111111 , 김영희 , 087002215555

Below the dialog box, there are two buttons: '확인' (Confirm) and '취소' (Cancel). The '취소'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the dialog box, there is a text box with the following text:

맞는지 확인하시고 「예상세액 결과보기」에서 소득·세액공제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로 제출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Below the text box, there is a dropdown menu with the following options:

- 새로 작성하기
- 작성방법 제외 (highlighted with a red box)
- 작성방법 포함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are several buttons:

- 기타서류 첨부
-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 공제신고서 출력
- 예

1.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어요

□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예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인적공제 가능 가족 수	독신 (본인)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연간 총급여액	1,408만원 이하	1,623만원 이하	2,499만원 이하	3,376만원 이하

*예)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은 총급여 1,623만 원 이하이면 납부세액 없음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납부 전제

□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하였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구분	공제요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본공제	본인	×	×	×		
	배우자	×	○	×		
	직계존속	60세 이상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64.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	2004.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1964.12.31. 이전 2004.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위탁아동		○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54.12.31.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	○	○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8세이상)	○	○	-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위탁아동·손자녀 포함)	2016.12.31. 이전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	○	○	
	의료비	×	×	○	
	교육비	×	○	○	직계존속 제외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	×	○	×	기본공제대상자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